

##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12.21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「교직원보수규정(이하 “보수 규정”이라 한다)」 제2조의2에 따라 국제대학교에 설치하는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기능 등)** ① 위원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적용 대상 교직원의 보수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(이하 “심의 등”이라 한다)한다.

1. 보수지급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의견수렴
2.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책정
3. 기타 보수 규정 운영 개선사항 권고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

② 위원회는 보수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대학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회의 참석 및 전문가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총장, 총장이 지명하는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교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총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

③ 교원 위원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.

④ 직원 위원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.

⑤ 교직원의 보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교원 소위원회 :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교원 위원
2. 직원 소위원회 :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직원 위원

⑥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구성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 등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자격상실)**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.

1.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교직원의 자격 또는 보직을 상실할 때
2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

3. 사임하였을 때

**제7조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제3장 위원회의 운영

**제8조(회의 개최 등)** 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.

②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여야 하며, 늦어도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를 개최·운영한다.

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 등의 정족수)**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관련 보직자와 교직원의 출석 발언)** 위원회가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경우, 대학 교직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의록 작성 등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의 제척)** 위원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3조(심의 등 결과의 처리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대학에 즉시 통보하고, 대학은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**제14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15조(운영경비 등)**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4장 위원회 규정의 개정

**제16조(규정 개정의 제안)**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2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장 또는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.

**제17조(규정의 개정)** 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견을 확정하고,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최초의 위원 임기 만료)**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3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내 제 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.